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오중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업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○ 기존에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업무 대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포괄적 위임하고 있었으나,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시·도지사가 모집 공고를 통해 업무대행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·관리하게 되었습니다.

○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

시장의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작성·관리 및 지정에
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